

업무협약서

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(이하 “KCL”)과 (사)친환경자동차양협회(이하 “협회”)는 국내 차양산업 선진화 및 제품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협약은 차양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양 기관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본원칙)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기관의 제반규정을 존중한다.

제3조 (업무협력 범위)

이 협약서에 의한 KCL과 협회의 업무협력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1) 건축물 차양기술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사업 발굴 및 수행
- 2) 차양 기술 및 성능기준 표준화 및 공동연구
- 3) 시험·검사업무의 상호협력(협회 회원사 지정 시험소 운영)
- 4) 차양기술 해외 기술이전 및 실시사업 관련 국제교류 상호협력
- 5) 단체표준제정 기술지원 용역 수행
- 6) 연구성과의 상호교류
- 7) 기타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4조 (수수료) 본 협약 이행(회원사 지정시험소)에 필요한 차양제품의 시험수수료는 KCL 규정에 따르고, 협회 및 회원사에서 의뢰하는 시험의 경우 시험수수료의 10%를 감면한다.

제5조 (비밀유지의 의무) 이 협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정보를 상호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.

제6조 (협약변경 및 해지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합의에 의거 업무협력 범위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제7조 (협약기간) 이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,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양 기관의 별다른 해지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2년씩 연장한다.

제8조 (해석)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, 해석상 의문이 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양 기관은 이 협약의 성립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서명한 협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9월 22일

(사)친환경자동차양협회장

박영남



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

에너지환경사업본부장

김상명

